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Q&A(지급, 반환)

학자금지원 업무 담당자용 관리자포털: <https://eduman.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상담센터: 1599-2280



Question

지급된 예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배정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2025학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업비와 대학운영비로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학기에 최종선발된 학생수 * 20만원 * 8(1학기 4개월, 2학기 4개월)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운영비는 대학별 선발인원 수에 따른 대학 운영비 정액 지급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1학기에 최종선발된 학생수 기준, 1년치(정규학기 8개월)입니다.

선발 인원수	50명 이하	50명 초과 100명 이하	100명 초과 200명 이하	200명 초과 500명 이하	500명 초과 1,000명 이하	1,000명 초과
운영비	1,200,000원	1,600,000원	2,000,000원	2,400,000원	2,800,000원	3,200,000원

2학기에 주거안정장학금 선발학생 수 증감에 따라 예산이 추가지급 또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학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운영수당은 매달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대학 운영비 중 70%(의무)는 대학 담당자 운영수당이며, 나머지 30%는 대학 재량으로 장학담당자의 운영수당이나 국내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사업추진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매달 지급하셔도 되고, 1학기가 끝날 때 한 번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학기별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운영비를 협의회 워크숍 참석 등에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별첨 11에 따라,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대학 담당자 워크숍 등 연수 참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협의회 워크숍에 주거안정장학금 설명 등이 진행된다면 가능

단, 단순 월 회비 등의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사업기간 중 사업비와 운영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언제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1학기 잔여예산 분은 8~9월 반환 진행 예정이며 향후에 반환 관련 공지와 매뉴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Question

재단에서 학생들에게 서약서를 확인하라고 안내하시나요?

Answer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 선발결과 공개일 이후, 선발된 학생 전체에 대해서 **서약서 확인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1학기 대상자에게 2회 발송)
대학마다 별도의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지급을 위해서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개별 독려해주시면 빠른 제출에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Question

학생들 서약서를 제출하는데 별도의 기간이 있나요?

Answer

선발된 학생들은 선발된 날부터 학기말까지(8.31 / 2.28)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학교 내 지급 기준에 따라 서약서 제출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급요청서는 언제부터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 장학생은 매월 지나간 월에 대한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예) 4월분은 5월부터, 5월분은 6월부터 작성할 수 있음
- 단, 매 학기 마지막월(8월, 2월)은 전일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 (예) 8월 5일에는 8월 4일까지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Question

지급요청서 관리 화면의 '합계', '총 인정금액', '최종승인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지급요청서 관리 화면의 '합계'는 학생이 지급요청서에 입력한 총 금액을, '총 인정금액'은 지급요청서 상 각 항목별 최대금액인 20만원의 합계 금액을, '최종승인금액'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이 승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Question

3월분(9월분) 주거안정장학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정액 지급금(3월, 9월분)은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즉시 지급하는 장학금액입니다. 이에 선발일 이후 장학생 서약서를 확인 후 즉시 지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학생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작성 완료자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생 선발 완료 후, 정액지급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중복수혜로 장학금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습니다.

Answer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업무처리기준 지원제한 기준에 따라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심사 시 확인하였습니다(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인 주거급여 대상자에 한함). 이에 4월부터 해당 사업 수혜자가 된 경우 혹은 기타 지자체 사업의 수혜자의 경우는 중복수혜 연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중복하여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학생의 인입이 있는 경우 관리자포털을 통해 지원 제외(대학 거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 관리자포털 > 장학 > 주거안정장학금 > 신청관리 > 장학생신청현황(상세)





Question

계절학기 수강생 등록 화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안정장학금은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해 계절학기(7~8월, 1~2월)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학생을 등록하지 않으시면, 학생들은 계절학기 지급요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자체기준 상 계절학기 미지급인 경우, 별도 등록 불요



Question

계절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대학 학사 기준인가요? 학생 계절학기가 7월중에 끝나는데, 8월도 지급 가능한가요?

Answer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계절학기 기간은 대학별 계절학기 운영 기간과 관계없이 1학기는 7~8월, 2학기는 1~2월로 합니다.

계절학기 강의종료일과 무관하게 계절학기 기간(2개월) 전체 지원하나, 대학별 지원제외 기준 마련을 통해 수강취소자 미지원 등 재량 운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급요청서에서 기숙사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nswer

기숙사비는 일반적으로 1학기치를 일시금으로 선불하므로, 지급요청서 상 입력하실 때에는 **대분류: 임차비용, 상세분류: 임차료 선금금, 개월: 4(3~6월)**을 입력하시면 지출금액이 1개월 분 자동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5, 6월 분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일수 상관없이 **1학기 분이면 4개월**로 계산합니다.

**3월 20만원 정액지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1학기 기숙사비 60만원일 경우, 3월 20만원 정액지급,
4월 15만원, 5월 15만원, 6월 15만원 지급 (60만원/4=15만원)

*****월세 선금금**도 임차료 선금금으로 작성 합니다.



Question

부모님 댁에서 통학할 경우 지급요청서에는 무엇을 적을 수 있나요?

Answer

부모님 댁에서 통학할 경우 임차비용과 이자비용은 신청할 수 없지만, **수선유지비**(수선재료 구입비, 설비 서비스 이용료 등),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를 **장학생 본인이 지급**하고 그 **지출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지급요청서에 작성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인집에서 살 경우, 형제자매간 동거할 경우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인과 장학생 간 월세 및 생활비 부담 관련 사인간의 계약서와 이를 뒷받침할 입금내역 등이 있다면 주거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간 동거의 경우에도, 지인집에서 살 경우와 같이 주거지의 명의자가 아닌 장학생은 명의자인 형제자매와 사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금내역이 있다면 주거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 후 학적변동, 중복수혜 등 사유로 반환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swer

학생은 대학의 주거장학금 사업비계좌에 반환을 하고, 대학은 관리자포털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관리 > 지급승인관리에서 해당학생 지급취소 후, 관리자포털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관리에서 지급거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수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내역 정리하고 계시다가, 한 학기가 끝나고 운영결과보고 할 시에(8~9월) 예산반환과 함께 반환하시면 됩니다.

